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5. 12. .
행정안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6월 26일, 임오경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6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행정안전위원회(2024. 9.02.)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
토론, 소위원회부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2025.11.17.) 상정, 심사, 의결(대안반영
폐기)

제16차 행정안전위원회(2025.11.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임오경의원)

제헌절은 기업의 생산성 저하 등의 이유로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우리나라 5대 국경일 중 유일하게 공휴일에서 제외되어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근간인 헌법을 공포한 날이라는 제헌절의 의미를 되새기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헌절을 공휴일로 재지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

이에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휴식권 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1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조문상 전문위원)

2021년 공휴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된 「공휴일에 관한 법률」(법률 제18291호, 2021.7.7.제정)에도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되었는데, 개정안은 현행법상 공휴일에서 제외되는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여 헌법정신에 대한 국민의식을 제고하고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제헌절은 우리나라 헌법의 제정 및 공포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점,¹⁾ 국경일 중 제헌절만 유일하게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 공휴일 확대에 내수 진작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한 것으로 보임.

1) 제정 헌법은 1948년 6월 30일 상정, 7월 12일 의결, 7월 17일 공포되었음.

다만, 제헌절이 공휴일이 될 경우 「근로기준법」 제55조2)에 따른 유급 휴일이 되므로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증가하게 된다는 점, 관공서가 휴무함에 따라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 등 사회적인 파급효과 역시 만만치 않다는 점에서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될 필요가 있고, 이를 토대로 공휴일 지정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윤건영의원)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하고, 동 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함.

2)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② 법 제55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이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제1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공휴일 및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을 말한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1. 일요일
2. 국경일 중 3·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
3. 1월 1일
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
5. 삭제 <2005. 6. 30.>
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
7. 5월 5일 (어린이날)
8. 6월 6일 (현충일)
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
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
- 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
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